

<문화체육과>

「부천문화의 집」 운영실태 보고

- 부천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의 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 이웃간의 친목도모와 동호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인 「부천문화의 집」을 조성함에 따라 운영계획 등을 확정,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

□ 방 침

- 건전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
- 쾌적한 실내분위기 유지로 이용자 상호간에 친화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제공
- 각 실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
- 문화의 집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지역정서에 맞는 문화의 집 운영
- 운영비는 98년 본예산에 부천시 보조금 및 문화예술단체 자부담금으로 운영

□ 일반현황

-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7-5번지 1층
- 규 모 : 710.4㎡(215평)
- 개 관 일 : 97. 12. 26
- 조성사업비 : 657,504천원(국고 230,000천원, 지방비 427,504천원)

□ 운 영

- 운영시간 : 10 : 00 ~ 20 : 00(동절기 19 : 00)시까지
-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 운영인원 : 5명(일반직 3, 운영보조 또는 자원봉사자 2)
  - 일반직 3명
    - 운영관리(일반직) 1명
    - 자료실 운영(사서직) 1명

- 시설물 관리(전산직) 1명
- 운영보조 또는 자원봉사자 2명
- 운영인원 배치내역
  - 운영관리(1명 - 일반직)
    - 행정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회계관리
    - 소모품 관리
  - 자료실 운영(1명 - 사서직)
    - 자료구입 및 관리
  - 시설물 관리(1명 - 전산직)
  - 시설이용안내(2명 - 운영보조 또는 자원봉사자)
    - 시설이용계약
    - 시설이용방법 안내
    - 행사(공연, 전시, 강연 등) 안내

※ 안전사고 예방(화재, 도난 등) 대비책

- 도난 : 97. 11. 13일 부천시장과 (주)에스원 대표 박정옥과 부천 문화의 집 내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계약
- 화재 : 부천문화의 집 내 소화기 10개(98. 예산으로 구입 예정)  
비상연락체계망을 비치 유사시 대비

○ 운영주체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지방자치단체 직영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인원 확보 지남</li> <li>• 「작은 정부 큰 행정 실천」에 부응하기 위해 가능한 관련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에 위배됨</li> <li>• 관련 전문직 미배치로 운영의 원활성 미흡</li> <li>• 감사 등을 초빙할 시 정부노입단가를 적용하므로 감사비가 적어 초청에 어려움이 있음</li> </ul>

<p>관련단체 위탁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전문직요원 확보로 운영의 원활성 기대</li> <li>• 관련단체 업무 연계추진으로 문화복합공간 효과 거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li> </ul>
----------------------	---	---

○ 현 운영실태

구 분	성명(직급)	담 당 업 무	비고
일반직원	백 수 현 (문화원사무국장)	문화의 집 업무 총괄	
	이 은 경 (일 용 직)	안내, 예약, 각 실별운영	
	김 동 언 (일 용 직)	정보자료실 및 CD, 인터넷부스 라운지 운영	
자원봉사자	박문영 외 2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문별 특기 지도(음악 외 8개 분야)</li> <li>• 문화의 집 내 청결유지</li> </ul>	

□ 향후운영계획

- 98. 예산확보 : 56,234,000원
  - 자료 구입비 : 10,000,000원
  - 프로그램운영비 : 6,000,000원
  - 인 건 비 : 13,032,000원
  - 경 상 경 비 : 27,202,000원
- 98.예산지출사항
  - 공공요금 지출 : 1,937,070원
    - 전기요금 : 1,299,540원
    - 상하수도 : 73,530원
    - 무인경비시스템 : 600,000원

○ 프로그램운영계획

요일	강좌내용	시간	인원	강사	장소	비고
화	주부노래교실	11:00-13:00	50	박근숙	문화관람실	5월중
수	뿌리찾기교실(성씨와 족보)	10:00-12:00	20	김원준	문화창작실	"
	사군자교실	10:00-12:30	20	김성숙	"	"
	종이접기교실	14:00-16:00	30	김진옥	"	"
	사진촬영교실(이론/실기)	16:00-18:00	15	강영희	"	"
	봉산탈춤교실(8개과정)	14:00-16:00	40	김애선	문화관람실	98. 1월 시행
금	글사랑 문학강좌(국내문학)	10:00-12:30	10	한산	문화창작실	98. 5월중
	사물놀이교실(얕음반)	14:00-16:00	18	손영철	문화관람실	98. 5월중
	외국어교류(6개국어)	18:00-20:00	30	류미자	문화사랑방	98. 1월시행
토	전통연 제작교실	16:00-18:00	9	성용부	문화창작실	98. 5월중
	경로무용연습	10:00-13:00	14	서정숙	문화관람실	98. 1월 시행
일	기타교실	10:00-13:00	5	김길원	개인연습실	"
	글사랑문학강좌(해외문학)	14:00-16:00	6	한명옥	문화창작실	"
	시조창 연습	16:00-18:00	32	이원국	문화관람실	"

※ 라운지(영상부스, CD부스, 인터넷 부스, A/V감상실)을 학원연합회, 부천교육청과 협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토록 협의

□ 시설물보유 관리현황

실별	면적 (단위:평)	시설물현황	비고
계	215평		
문화사랑방	5.5평	8인용테이블 1, 의자 8개, 쉑크대 1, 냉장고 1, 전기포트 1, 에어컨 1, 쿠커 1	
문화창작실	16.66평	8인용테이블 3, 의자24개, 강사용 책상 1, 강사용 의자 1, 진열장 1식, 냉·난방기 1, 화이트보드 1, 라디에이터 2	
정보자료실	4평	진열장 1식, 복사기 1, 도서 2,053권, CD 1,942장, 비디오 556장, LD 201장	
문화관람실	60평	빔프로젝트 1,150" 스크린 1, 밀러볼 2, 스피커 4개, 의자 156개, 냉·난방기 2개, 미술품 50점, 커튼 1식, 이동식무대마루 1식	

문화감상실 (A/V감상실)	5.5평	43" 프로젝션 TV, LDP 1, VTR 1, 반주기 1, 카세트데크 1식, 앰프 1, 스피커 2, 마이크 1, 장식장 1, 소파 1식, 에어컨 1, 분배기 1	
인터넷부스	3.75평	컴퓨터 6, 모니터 6, 칼라프린터 1, 인터넷 전용 통신설비 1식, 테이블 1식, 의자 2	
영 상 부 스	5.2평	VTR 3, 25" 칼라 TV 3, 헤드폰 9, 분배기 3, 소파 3인석 3	
CD 부스	3.7평	CDP 1, 헤드폰 6, 원형테이블 1, 의자 6, 조경 1식	
개인연습실A	3.33평	피아노 1, 의자 1, 에어컨 1, 라디에이터 1	
개인연습실B	3.33평	에어콘 1, 라디에이터 1	
라 운 자	48.75평	안내데스크 1, 컴퓨터 1, 소파 3인석 6개, 테이블 3, 실내조경 1식, 냉·난방기 1, 복제미술품 56점	
화 장 실(남)	4평	양변기 2, 소변기 2, 소변자동세척기 2, 에어타올 2, 세면대 1, 거울 1, 라디에이터 1	
화 장 실(여)	4평	양변기 2, 세면대 1, 거울 1, 에어타올 1, 라디에이터 1	
로 비(A) (문화의집출입구)	18평	싸인보드 1, 조경1식	
로 비(B) (남자화장실앞)	7.5평	소파 1식	
로 비(C) (개인연습실앞)	7.28평	소파 1식, 에어컨 1	
조 정 실	3.5평	LDP 1, VTR 1, 카세트데크 1, 의자 1, 앰프 1, 마이크 2, 분배기 1, 장바케이스 1	
창 고 (자재보관용)	3.5평		
사 무 실	3.5평	책상 1, 의자 1	
창고및보일러실	4평	보일러 1식	

□ 문화의 집 세부 구성 내역

구 분	공 간 구 성 내 용	비고
안 내 데 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집 전체 관리</li> <li>○ 방문객 관리</li> <li>○ 정보상담</li> <li>○ 컴퓨터를 통한 각 기능 공간예약 관리</li> <li>○ 자료 대출 지원</li> </ul>	
전시정보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잡지), 음반, 비디오 등 각종 문화정보 자료제공 장소</li> <li>○ 열람을 위한 자료구비</li> </ul>	
로비 및 라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집 전체의 이미지와 분위기 좌우</li> <li>○ 다른 시설과 완충작용을 하고 동선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게시판 및 안내SIGN을 통한 이용관리 보호</li> <li>○ 독서 및 토론 만남의 공간 시설이용을 위한 대기공간으로 활용</li> </ul>	
C D 부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를 통한 개인별 음악감상과 동시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li> <li>○ 헤드폰 사용으로 타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li> </ul>	
전시영상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TR을 통해 각종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 감상공간</li> <li>○ 타 시설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헤드폰 사용</li> </ul>	
전시정보검색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 전문 최신정보를 습득, 교환</li> <li>○ 인터넷전용회선을 사용</li> </ul>	
전시문화사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공간을 위한 공간</li> <li>○ 주부모임, 동아리, 동호회, 생일파티 등 예약에 의한 관리</li> <li>○ 주방을 설치 모임의 편의제공 (식료품, 다과회 준비 등)</li> </ul>	
전시영상감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A/V감상공간으로 동호인 등 작은 단체 사용 - 예약관리</li> <li>○ 방음시설</li> </ul>	
전시문화관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영화관람, 발표회, 강연, 공연, 집회 등 다목적 홀</li> <li>○ 액자레일 및 조명, 전시용 벽체 형성</li> <li>○ 전동스크린 및 프로젝터</li> <li>○ 무대마루 및 커트</li> </ul>	

창고 및 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문화관람실의 부속실 (지원 및 관리시설)</li> <li>○ 수납을 위한 선반 및 운반기 (창고)</li> <li>○ 행사 진후 장비의 조작 (조정실)</li> </ul>	
개인연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아노 및 개인악기를 이용한 연주연습</li> <li>○ 전통 및 현대무용과 요가, 명상을 위한 공간</li> </ul>	
전시문화창작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 및 회의기능 수행</li> <li>○ 취미, 실용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요리, 지점토, 서예, 종이공작, 꽃꽂이 등</li> <li>○ 창작물 수납을 위한 선반장</li> <li>○ 회의 및 강의를 위한 화이트보드 설치</li> </ul>	

각 실(기능)별 운영실적(97. 12월부터 ~ 4월 15일까지)

실(기능)별	운영내용	이용인원	비고
계		11,954명	
문화관람실	전시회, 총회, 연극, 음악연주(연습), 시낭송, 경로무용, 출판기념, 탈춤장습	3,142명	
문화창작실	사군자, 시조, 외국어교류	516명	
문화사랑방	소규모 회의	445명	
개인연습실	기타, 피아노, 대금	196명	
C D 부스	음악감상	2,559명	
인터넷부스	인터넷, 정보	567명	
A/V감상실	노래교실, 영화	2,915명	
영상감상실	영화	1,614명	

□ 98. 총소요예산

내 용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02,167		
문화의 집 운영요원 3명(일반, 사서, 전산)	39,449	○ 6급5호봉 13,254,160원 ○ 7급5호봉 11,885,680원 ○ 8급5호봉 10,709,120원 ○ 월액여비 등 100,000원×3명×12월 =3,600,000	
문화의 집 운영보조 요원	19,516	○ 21,720원×2명×25일×12월=13,032,000원 ○ 월액여비 등 100,000원×2명×12월 =2,400,000원 ○ 수당 21,720원×64일×2명=2,780,160원 ○ 퇴직적립금 651,600원×2명=1,303,200원	기확보 (13,032천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중식제공)	5,250	○ 5,000원×3명×350일=5,250,000원	기확보
기본사무용품구입비	1,200	○ 100,000원×12월=1,200,000원	"
안내홍보물 제작비	5,000	○ 500,000원×10회=5,000,000원	"
인터넷 모뎀구입	300	○ 300,000원×1대=300,000원	"
문화의 집 자료구입비	10,000	○ 도서류 등 5종 200,000원×5회=10,000,000원	"
공연출연자 보상금	6,000	○ 3,000,000원×2회=6,000,000원	"
전기료	6,000	○ 500,000원×12월=6,000,000원	"
상하수도 사용료	2,400	○ 200,000원×12월=2,400,000원	"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1,800	○ 150,000원×12월=1,800,000원	"
공개강좌 강사료	780	○ 기본 70,000원×6회=420,000원 ○ 초과 30,000원×2시간×6회=360,000원	"
난방연료비	2,072	○ 411원×105일×8시간×2ℓ×3대 =2,071,440원	"
월간지 책자구입	2,400	○ 10,000원×20종×12월=2,400,000원	"

※ 총액 : 102,167천원

- 기확보 : 56,234천원

- 미확보 : 45,933천원(추경 확보예정)

전국 「문화의 집」 운영실태 현황

지역	「문화의집」명	주 소	연 락 처	운 영 실 태
계	17개소			
서울	서대문 문화의집	서대문구 홍은3동 산 26 -155	02)3217-0359	전문위원 1명을 구청에서 발령하고 일용 직 2명을 별도 채용하여 운영
	동대문 문화의집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2 -121	02)215-0588	문화회관에서 관리(문화의집 전담직원은 기능직 1명)
	은평문화의집	은평구 응암1동 96-3	02)388-6145~6	공무원(8급 1명, 일용 2) 3명을 배치하 여 운영
	강서문화의집	강서구 화곡동 980-1	02)690-8977~8	강서구에서 강서문화원과 공동운영 후 문화원에 이관계획(6월중)
광주	북구문화의집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9-1	062)510-1208	추진위원회(6명)을 구성, 일용직 1명을 채용하고 자원봉사자 1명 등 2명으로 운 영(문화원에 위탁예정)
경기	부천문화의집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387-5	032)656-4306	
강원	강릉문화의집	강원도 강릉시 홍제1동 15-2	0391)647-4284	기능직 1명을 배치하여 임시적으로 운영 하고 있음(문화원에 위탁계획)
충남	아산문화의집	충남 아산시 은천1동 온 양농협 2층	0418)44-4864	단위농협 이사회에서 자체 운영
충북	제천문화의집	충북 제천시 중앙로 2가 26-1	0443)40-1055	○ 98. 4. 20 착공 ○ 98. 5월말 개관 예정
전남	목포문화의집	전남 목포시 죽교동 300	0631)43-1997	시에서 고용직 1명, 청경 1명을 배치하여 운영
전북	정읍문화의집	전북 정읍시 연지동 253 -54	0681)537-3005	여성회관에서 운영(지정배치 직원은 8급 1명, 기능 1명)
경남	김해문화의집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9 -3	0525)30-3429	시에서 정규직(6급) 1명, 일용직 2명 배 치 운영
	밀양문화의집	경남 밀양시 삼문동 4- 32	0527)356-3930	시에서 정규직 2명(7급 1, 기능 1)과 일 용 1명을 배치하여 운영
	산청문화의집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 리 329-1	0596)73-6374	군에서 기능 1, 청경 1명을 배치하여 운 영
경북	구미선산 문화의집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동 부리 542-3	0546)482-3060	98. 12. 29 조례제정 및 구미문화원과 개 약하여 문화원에서 운영중
	풍기문화의집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 부4리 463-1	0527)636-2868	98. 3. 4 조례제정 및 영주문화원과 계약 하여 문화원에서 운영중
제주	성산일출 문화의집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1136-21	064)30-1225	98. 6월말 개관예정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7. 12. 5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유 영 (인)

○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401호

###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집의 설치 등) ①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구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한다.

②문화의 집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1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문화의 집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 CD, 비디오 등을 통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2.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폭넓은 정보습득 및 교류기회 제공
3. 소규모 공연, 전시, 강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제공
4. 주민 친목도모를 위한 휴게공간 제공

제4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의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①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

여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비 및 대어받은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문화의 집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기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 [ 1997. 12. 8  
조례 제232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풍기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463-1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문화예술 생활체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3. 연주, 영화, 음악, 무용 등의 상영 또는 공연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관리기간,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인건비, 자료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매년마다 제11조의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문화의 집 시설 중 대공연장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선산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42-3, 542-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2.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3. 통신시설, 간행물을 통한 정보제공 역할
4.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문화사랑방 및 주민 집회장소를 제공
5. 기타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공간 역할

제4조(관장) 문화의 집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도·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문화의 집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정의) 문화의 집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의 집”이라 함은 기본시설(공연장, 전시실, 공방, 연습실, 감상실)과 부대시설(조명, 음향 시설, 영사기, 피아노, 냉난방기)등을 말한다.
2. “문화의 집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문화의 집 입장”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을 이용하거나 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 문화의 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강릉시규칙 제 호

###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자) ①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 1. 전문 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 2. 일반 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전문강사초빙) ①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릉시각중위원회설비변상조례에 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